

#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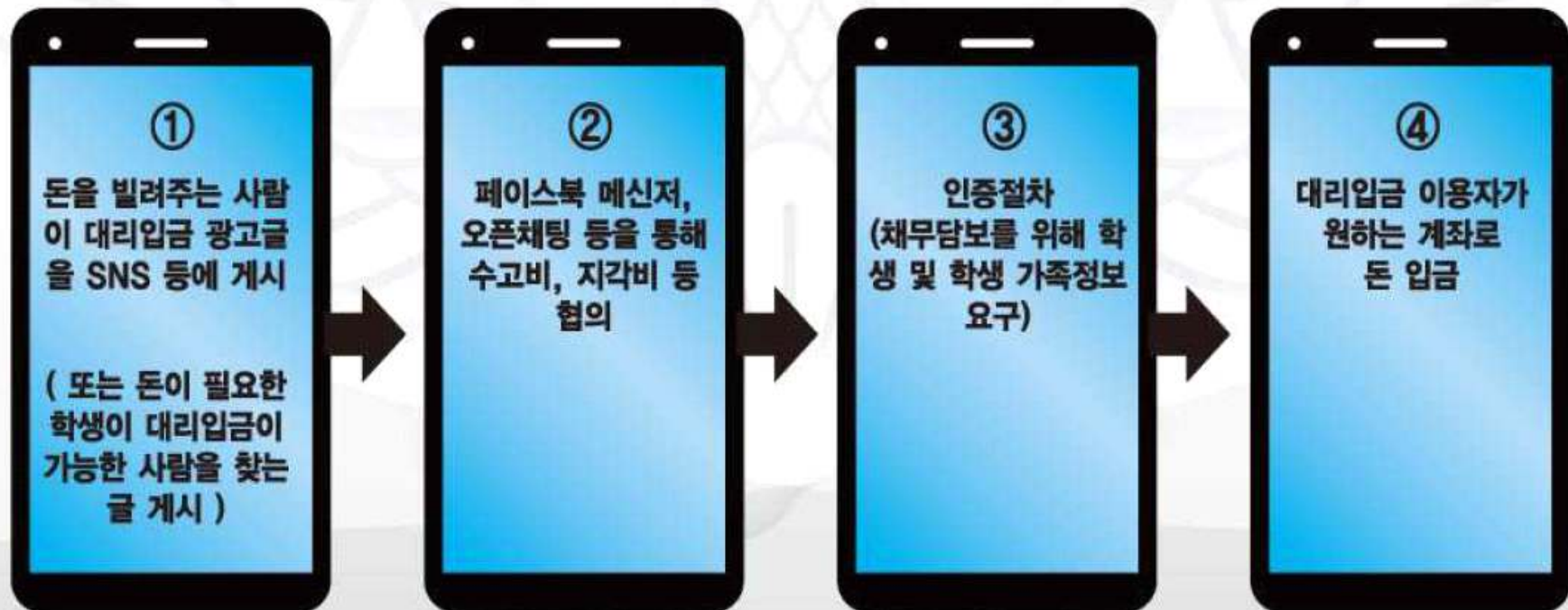


경찰청

# 대리입금이란?

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(주로 청소년)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(이자)를 받는 행위(줄임말로 '델입')

## [ 대리입금이 이루어지는 과정 ]



# 대리입금의 문제점

법정이자율을  
과도하게  
초과한 수고비  
(이자)



주소, 전화번호 등  
개인정보 유출  
가능성



폭행, 협박 등  
2차 피해  
발생 우려



# 최근사례 I

콘서트 티켓 구입 비용이 당장 없어 비싼 이자  
(10만원을 1주일 빌리는데 이자 3만원, 연 1,560%)를  
주고도 SNS를 통해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

고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 
수고비 30%, 지각비 2시간 당 1천원 조건(연 5,000% 상당)으로  
8만원을 빌리기 위해 대리입금 이용

## 최근사례 II

고교생들을 대상으로 20만원을 빌려주고  
30만원(연 2,600~8,200%)을 갚도록 하고,  
학생들이 이를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전화하여  
돈을 갚으라고 채무독촉을 한 가해자 5명 검거

도박에 빠져 4년간 도박 빚이 3,700만원이 된 고등학생의  
자금 출처가 일주일에 이율 50%(연이율 2,600%)인  
대리입금으로 확인

# 사례영상



MBC 실화탐사대 방송영상 (3.13)

#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한 경찰청 추진사항

## • 대리입금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(5.1 ~ 5.30)

- 대리입금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
- 어떠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?
  - 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과도하게 많은 수고비(이자)를 요구하거나, 요구한 수고비를 준 경우
  -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·협박·감금 등을 당하였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한 경우

# 피해예방 요령

- 1** | SNS 등 온라인 상에서는 **법정이자율(연 24%)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수고비(이자)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,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 않도록 유의**
- 2** | 대리 입금 행위는 **실정법에 위반되고,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거나 대리입금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**



## 피해예방 요령

3

본인에게 대리입금을 해 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, 주소,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려고 하거나 협박하면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

4

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, 이 경우 원금만 돌려주면 되며, 수고비(이자)를 줄 의무는 없음

# 신고·제보시 보호·지원

## 신변보호 제도

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△거주지 · 학교주변  
맞춤형 순찰 △피해자 정보 112시스템 등록 △스마트워치 지급  
등 맞춤형 보호조치 가능

## 가명조서

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  
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11조

# 신고 · 제보시 보호 · 지원

##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

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 법률상담 및 변호사의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가능  
(학교폭력 ·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민사사건)

## 사안별 맞춤형 전문기관 연계

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△청소년상담복지센터(종합상담) △ Wee 클래스(학교부적응) △정신건강복지센터(스마트폰 · 인터넷 과의존) △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(도박 중독) 등 사안별 맞춤형 연계 가능

**감사합니다**



**경찰청**